

## 제 15 기 임시주주총회 참고서류

※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및 경영참고사항 등 상세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참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 제1-1호 사업 목적 개정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b>제2조(목적)</b>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2.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이전 3.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연구용역사업 4. 임상시험 대행사업 5. 의·생명과학 및 환자치료사업 영위업체 등에 대한 유가증권 등의 투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 6.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7. 부동산 임대업 8.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b>제2조(목적)</b> (좌동) 1. <u>의약품(동물 대상 포함) 관련 다음 각 목의 사업</u> 가. <u>연구개발, 지식재산권 획득·이전</u> 나. <u>임상시험</u> 다. <u>제조, 수입, 판매 등 유통</u> 2. <u>의·생명과학 및 환자치료사업 영위업체 등에 대한 유가증권 등의 투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 사업</u> 3. <u>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 관련 사업</u> 4. <u>부동산 임대업, 관리업</u> 5. <u>위 각 호와 관련된 연구, 대행, 자문 등 기타 일체의 사업</u>	목적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게 될 신사업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변경함

#### □ 제1-2호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b>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b> ① 이 회사는 본점을 <u>부산광역시</u> 내에 둔다. (이하 생략)	<b>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b> ① 이 회사는 본점을 <u>서울특별시</u> 내에 둔다.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함

#### □ 제1-3호 자본조달 관련 규정 개정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b>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b>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이익주</u> 로 한다.	<b>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b>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사억주</u> 로 한다.	대규모 자금유치의 경우를 대비하여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확대
<b>제8조(주식의 종류)</b> ① (생략) ② <u>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 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u>	<b>제8조(주식의 종류)</b> ① (좌동) ② <u>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통칭하여 "우선주식"이라 함), 의결권의</u>	상법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변경

<p>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 부 혹은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③ (신설)</p>	<p>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의결권배제·제한주식”이라 함),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 및 이들의 전 부 혹은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③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p>	<p>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제한함</p>
<p><b>제8조의2(종류주식)</b></p> <p>① 이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의 상 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p> <p>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10 %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p> <p>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p> <p>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며, 전 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 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p> <p>⑥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제8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p> <p>⑦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만기보장 수익율을 발행 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 하 되 동조 제 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이익배당금 지급 내역이 있을 경우 그 배당 누적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p>	<p>(삭제)</p>	<p>회사가 발행하는 종류 주식을 기존의 정관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함</p>

<p>조정하려는 경우 이 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p> <p>⑧ 상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이 되는 날 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소정의 우선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p> <p>⑨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까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p> <p>⑩ 제9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 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p> <p>⑪ 제9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을 준용한다.</p> <p>⑫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 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 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발행하기로 한다.</p> <p>⑬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p>		
<p>(신설)</p>	<p><b>제8조의2(우선주식)</b>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p> <p>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p>	<p>우선주 내용 신설</p>

	<p>④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이므로 할 수 있다.</p> <p>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을 잔여재산 분배시 우선 지급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위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신설)	<p><b>제8조의3(전환주식)</b>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p> <p>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전환주 내용
(신설)	<p><b>제8조의4(상환주식)</b>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p>	상환주 내용

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p>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p> <p>⑧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신설)	<p><b>제8조의5(의결권배제·제한주식)</b>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p> <p>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p> <p>③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의결권배제 제한주 내용
<b>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b>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b>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b>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할 수 있다.	전자등록에 대한 재 량권 설정
<b>제10조(신주인수권)</b> ①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b>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b> ① (좌동) ② (좌동)  1. (좌동)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제10조의 제목 수정  향후 제3자배정 증 자가 대규모로 이루 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발행한다

<p>3. 상법 제340조의4, 상법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p> <p>5. <u>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u></p> <p>6.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p> <p>7.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p> <p>8.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 (신설)</p>	<p>3. (좌동)</p> <p>4. (좌동)</p> <p>5. 신주를 모집하거나 <u>모집을 위하여</u>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6. <u>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자산매입, 자본제휴, 인수합병, 목적사업 수행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연기금 펀드, 제휴회사, 국내외 제약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또는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p> <p>7.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를 삭제</p> <p>상장을 위한 목적으로만 신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p> <p>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당 형식으로 수정</p> <p>한도 삭제</p> <p>필요에 따라 검토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함</p>
<p><b>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b></p> <p>① 이 회사는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u>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제약 회사, 국내외 의 기관 투자자, 연기금 펀드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u></p>	<p><b>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b></p> <p>① (좌동)</p> <p>1. (좌동)</p> <p>2. <u>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자산매입, 자본제휴, 인수합병, 목적사업 수행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연기</u></p>	<p>전환사채 발행 가능한 경우를 확대함</p>

<p>3. <u>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4. <u>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 경영상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 또는 다른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신설)</p> <p>② (생략)</p> <p>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서 신설)</p> <p>⑥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발행가능 전환사채 액면총액 이내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내지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u>금 펀드, 제휴회사, 국내외 제약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또는 기타 투자자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3. <u>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② (좌동)</p> <p>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u>다만, 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⑥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발행가능 전환사채 액면총액 이내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내지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필요에 따라 검토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함</p> <p>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p>
<p><b>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b></p> <p>① 이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이 <u>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u>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b>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b></p> <p>① 이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이 <u>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좌동)</p> <p>2. <u>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자산매입, 자본제휴, 인수합병,</u></p>	<p>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의 한도를 확대함</p> <p>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가능한 경우를 확대함</p>

<p>3. <u>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4. <u>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 경영상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 또는 다른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서 신설)</p> <p>⑥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사 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발행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총액 이내에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u>전환사채</u>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u>전환가액</u>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u>목적사업 수행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연기금 펀드, 제휴회사, 국내외 제약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또는 기타 투자자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3. <u>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u>다만 발행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⑥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사 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발행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총액 이내에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u>신주인수권부사채</u>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u>행사가액</u>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필요에 따라 검토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함</p> <p>액면가액 미만 발행하는 경우 주총승인을 얻도록 함</p>
<p><b>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b>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u>전자등록한다.</u></p>	<p><b>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b>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u>전자등록할 수 있다.</u></p>	<p>전자등록에 대한 재량권 설정</p>

□ 제1-4호 감사 관련 규정 개정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b>제40조(감사의 수와 선임)</b>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u>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한다.</u>            (이하 삭제)</p>	<p><b>제40조(감사의 수와 선임)</b>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단서 삭제)            (좌동)</p>	<p>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회사는 상근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바, 상근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p>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건

□ 제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주상은)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상은	'65.10.11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약학 박사과정 수료	없음	신규 선임
	이사회	現) 신라젠(주) 부사장 前) Glaxosmithkline 사업개발 및 전략 마케팅 이사 레오파마 CEO	없음	

□ 제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권희)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권희	'70.03.17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없음	신규 선임
	이사회	現) 신라젠(주) 전무 前) 삼성전기 재경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 부장	없음	

□ 제2-3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홍승기)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홍승기	'59.02.17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국제법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U'of Penn) 로스쿨 석사(LLM)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없음	신규 선임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現)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해양경찰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없음	

□ 제2-4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정영진)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영진	'66.08.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사법학과) 미국 Northwestern Law School 법학석사(LL.M)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상법 및 중국법)	없음	신규 선임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現)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법무법인 대륙(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회) 前)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없음	

□ 제2-5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남태균)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남태균	'69.11.19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약학 석사	없음	신규 선임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現) (주)메디인사이트 대표이사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없음	

**제 3 호 의안 : 비상근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비상근 감사 선임의 건 (정성미)

(1) 감사 후보자 정성미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성미	'64.10.07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Food Science 석사 연세대학교 MBA 졸업	없음	신규 선임
	이사회	前) Microsoft Korea 컨슈머&디바이스 사업본부 본부장(부사장) 前) IBM Korea 마케팅,커뮤니케이션 & 사회공헌 팀장(전무) 前)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전략마케팅팀 마케 팅 그룹장(상무)	없음	

(2) 후보자의 최대주주와의 관계·회사와의 거래관계·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단위 : 백만원)

구분	전기	당기
	보수한도	보수한도
금액	2,000	1,000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단위 : 백만원)

구분	전기	당기
	보수한도	보수한도
금액	300	100

**제 6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회사 주요 인력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함으로써 높은 경영 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0 년 7 월 29 일 이사회에서 총 61 명을 대상으로 보통주 총 1,379,000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본 안건은 2020 년 7 월 29 일 이사회에서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제 15 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2020 년 7 월 29 일에 기 공시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참고 바랍니다.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000 외 60 명	당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	보통주	1,379,000
총( 61 )명	-	-	-	총( 1,379,000)주

※상기 부여대상자는 등기임원이 아닌 임직원에 해당하며, 각 개인별 부여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의 1 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여 부여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보통주 신주발행 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1,379,000 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행사가격: 12,100 원 상법 제 340 조의 2 제 4 항의 권면액과 실질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이상으로 결정함(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 176 조의 5 제 1 항제 2 호 나목에 따른 가격) 2. 행사기간 : 2022.07.30~2031.07.29 (부여수량 중 2년 경과 30%, 3년 경과 30%, 4년 경과 40% 행사 가능)	-
기타 조건의 개요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 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71,617,125	발행주식 총수의 15%	기명식 보통주/종류주	10,742,568	2,342,223

- 최근 2 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연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16 년	2016.03.23	62 명	보통주	2,890,000	2,045,777	447,000	397,223
2017 년	2017.03.03	1 명	보통주	200,000	-	-	200,000
2018 년	2018.02.23	43 명	보통주	500,000	-	284,000	216,000
2018 년	2018.03.23	2 명	보통주	50,000	-	-	50,000
2019 년	2019.03.04	30 명	보통주	290,000	-	190,000	100,000
2020 년	2020.07.29	61 명	보통주	1,379,000	-	-	1,379,000
계		총 199 명		총 5,309,000 주	총 2,045,777 주	총 921,000 주	총 2,342,223 주